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1600146

신 청 인: 주식회사 비가림(대표이사 박경식, 임양신)

피신청인: 안기풍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주식회사 비가림(대표이사 박경식, 임양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10-5

피신청인: 안기풍

경기도

분쟁 도메인이름은 "비가림.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후이즈(대표이사: 이청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43

(코오롱사이언스밸리1차) 10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6. 8. 1.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6. 8. 10.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6. 8. 11. 센터에 등록인의 신원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6. 8. 19.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6. 9. 8.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6. 8. 31.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16. 9. 6.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정찬모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같은 날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6. 9. 7.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추가서류를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행정패널은 신청인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6. 9. 14. 센터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였다. 센터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2016. 9. 27. 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 및 증거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0년 3월 이래 거래 관계가 있는 동종업자로서 2011년 1월 “(주)케노픽스”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차양, 창문안전대, 기둥커버 등 금속구조물 제품을 생산 판매하다가 그들간의 동업관계가 종료할 무렵에 피신청인은 “(주)케노픽스”를 창업하였고, 신청인은 2014년 12월 “(주)비가림(BIGARIM)”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신청인은 2012. 11. 27. “B.Garim”을 상표 등록한 이후에(갑 제10-1호증) 그와 유사한 국문과 영문이 들어간 다수의 상표를 등록하였다(갑 제9호증 내지 14호증). 한편 피신청인은 2015. 3. 10.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 “비가림.com” (이하 “분쟁 도메인이름”이라 함)을 등록하였다(갑 제1호증).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피신청인이 등록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법인명인 (주)비가림 및 그가 등록한 다수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피신청인은 과거 신청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서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자신에게 이전해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B. 피신청인

“비가림”이라는 단어는 피신청인을 비롯한 차양 관련 업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오던 것이므로 신청인의 독점적 사용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전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비가림” 과 신청인의 법인명 및 그가 등록한 다수의 상표는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 쉽게 인정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비가림” 이라는 단어는 차양 등과 관련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용어이며 신청인이 이 용어의 사용을 독점할 수 있는 이차적 의미를 구축한 것으로 보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 하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간의 오래된 동업관계로 볼 때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에 신청인이 법인명을 “(주)비가림” 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호 또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주장할 근거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이 사건 발생이전에 존재하였던 당사자간의 동업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과 고객의 혼동을 통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을 목적, 경업자에게 해당 도메인이름을 이전하여 고액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D. 구제의 방법

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자신에게로의 이전을 청구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가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일반적으로 우월한 권리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결정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인 < 비가림.com >을 말소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정찬모

결정일: 2016년 10월 9일